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

일시·장소	2024. 2. 7.(수) 14:00~15:30 소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위원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복구 관계자 : 부구청장, 기획팀장
회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제2호 :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 제3호 : 2024년~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산정의 건■ 제4호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 회의내용

■ 위촉장 수여 및 부구청장 인사말씀

■ 회의 시작

(기획팀장)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 호선과 안건 상정, 토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임시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보통 관례적으로 최고 연장자이신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최고 연장자 이신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위원장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입니다. 심의위원 모두가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신데 제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건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위원장

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능력 있고 다들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을 추천하더라도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위원)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그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임시위원장) 에이 추천을 했는데...

(○○○위원) 현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님을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또 안하겠다... 추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는데 본인이 사양을 하고 임시위원장인 저를 다시 재추천 했는데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울며 겨자먹기로 위원장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잘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잘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만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의정활동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팀장으로부터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자료가 지금 타 구에서 적용되는 의원들...

(기획팀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1차 회의에서 위원회 결정 사항이고 그것을 이제 주민 여론 수렴에 부칠 사항입니다. 1차 회의를 기 개최한 타 구 동향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호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에 따르면 회의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결정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는 맞고 여기 회의하는 부분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 굳이 공개, 비공개 이걸 어떻게 하나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일단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회의 공개가 원칙이나 3분의 2이상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개하는 걸로 3분의 2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번호 제3호 “2024년부터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10만원 단위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의정활동비가 앞에는 11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최고 150까지...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걸 세분화 시킨게 지금 보면 수집연구비가 120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팀장) 그걸 두 개 합쳐해서...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기획팀장)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 수집하고 활동보조비 성격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나름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구분해놓긴 했지만, 지금 현재 개정 전에는 이 두 항목을 합쳐 가지고 월 110만원을 받고 있고, 지금 개정 의결은 150만원 이내입니다.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 항목별 구분은 필요치 않으나, 일부 인상하겠다고 하면 항목별로 인상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위원) 아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110만원 되어 있지만 보통 의정활동비이라는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그 활동비라는 의미가 보면 그냥 간담회, 회의자료 수집, 정보수집, 기타 등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110만원 주는건데... 그걸 묶어서 그 의정활동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보조활동비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조활동비라고 하면 예시를 든다면...

(기획팀장) 공무원들의 경우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성격의 체수당을 지급받는 것처럼 구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할 때 앞에 것은 의정자료 수집 연구하는 드는데 비용이고 보조활동비는 그런 행위를 하는 데 드는 실비 성격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굳이 나누면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그러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이고 보조활동비 30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합친 겁니까?

(기획팀장) 네. 합친 겁니다.

(○○○위원) 140만원으로 결정한 타구 리스트를 보니까 개인당 구의원 수 대비 보니까 하위에 있는 구네요. 보니까 그죠? 참고자료 8페이지를 보면 구별 1인당 인구수 보니까 최하위에 있는 구네요 전부 다. 그 외에는 더 상위에 있는 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기획팀장) 맞습니다.

(기획팀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하고 합해서 11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말 아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나 보조활동비나 사실은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한꺼번에 같이 지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항목만 괜히 이게 구분돼 있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합계금액 그대로... 전부 다 그런 내용 아십니까? 그렇죠? 괜히 이거 항목 나눠 가지고 보조활동비다 의정활동 수집 연구비다 뭐 이렇게 나누고 냈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합해서 얼마를 주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8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수, 그 다음에 의원 1인당 주민 수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부산시 전체에서 다섯번째로 담당하는 인구가 많다 이렇게 통상 보면 통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통계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참고는 물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북구가 좀 재정 자립도는 낮은 수준에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면 너무 이렇게 인상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논의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같이 한꺼번에 얼마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 질문 하십시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물론 재정 자립도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1인당 의원 1인당 주민수가 순위에서는 그래도 5위에 속하고 기왕 나름대로 어차피 다 110만원에서 올릴거면 그냥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 150만원으로 그냥 인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더 독려하고 또 우리가 더 감시하고 또 채찍질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저 ○○○위원님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무슨 일

을 하다 보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데이터 같은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인구를 우리가 관리하는 그 뭐라합니까 구민들을 직접 챙긴다 할까요 지킨다 할까요 좀 가까이 간다 할까요 이런 비용들이 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고려를 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를 많이 주고 윤택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게 낮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50만원 다른 구 수준처럼 맞추면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20만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흔히들 우리 사회 여론을 보면 지방의원들은 별로 그렇게 언론보도가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맨날 일은 안하고 세비만 받아간다 언론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의원들도 자꾸 이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올려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위원) 가령 우리 위원님 말씀 공감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러면 우리 복구에서 그동안 어떤 가지적인 효과 또는 외부적인 성과를 냈는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3년 22년도 사실 딱히 주목할 만한 그런 대외적인 성과들은 드러난 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부적절한 이슈들이 종종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속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선거 말고 달리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향후 이제 3개년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의원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누가 말리더라도 사실 더 최대한의 액수를 지급하려는 마음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월 10만원인데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봤더니 14명이고 140 곱하기 12 해 봐야 사실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또 이거 혜택을 누리는 또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 서구 또 영도구 수준에서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140만원 잠정액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의정활동비가 여기 오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상향 조정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11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 인상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의 어떤 자질도 자질이지만 언론사에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는 뭘 봤냐면 인접해 있는 사상구하고 강서구 보면 재정 자립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의정비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보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현재 활동비 인상 폭을 얼마까지 가는 부분을 조금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북구는 좀 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자리 어렵게 이 안이 올라온 만큼 그동안에 이런 성과들이 좀 부족했다 치더라도 조금 더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중에 더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오히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은 그럼 얼마로 제안하십니까?

(○○○위원) 150...

(위원장) ○○○위원님은 140 또 다른 위원님? 네 ○○○위원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쭉 다 들어봤는데 경험해보니 구의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조금만 잘못된 민원 같은 게 전부 의원님들한테 다 갑니다. 진짜로 내가 그걸 보고 이 의정활동비 이거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기준선을 150을 딱 잡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차 회의입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150으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거쳐서 나온 걸 가지고 2차 회의 때 다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 제기도 다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150으로만 들어 놓고 그다음에 2차 공청회나 이런 걸 보고 2차 회의 때 좀 심도있게 토론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만에 금액이 좀 인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 돼야 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군별 의정비 현황을 보면 사실 복구가 지금 월정수당으로 볼 때에 우리가 좀 하위권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정활동비까지 포함이 됐을 때에 금액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좀 하위권에 머무를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다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에서는 가능한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께서도 15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대충 기준은 제시가 됐는데 지금 140만원을 제시하신 분도 있고 150만원 제시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먼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해야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먼저 ○○○위원님께서 기준 금액을 제시한 14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

150만원 하는 게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 (거수)

그러면 우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일단 산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번호 제4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여론조사에는 소요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공청회를 할 때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기획팀장) 홍보에는 한 60만원 정도 현수막 일단 제작비는 그렇고 공식적으로. 나머지는 고시 공고가 나가고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 고시 공고가 나오고 우리 관보에도 나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홈페이지나 할 수 있는 데는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거를 공청회다 아니면 여론조사다 이거를 어느 쪽으로 결정을 될 거라

고 생각하고 예산에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급하게 예비비를 당겨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150만원?

(기획팀장) 500명 여론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 7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여론조사 하는 데 700만원. 돈 많이 드네.

(기획팀장) 일단 여러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것만 한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청회 쪽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결정 나는 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맞춰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기에 설문조사 150만원 이거는 뭐예요?

(기획팀장)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 오늘 앞 안건에서 기준 상한액을 150만원 했을 때 공청회를 해서 그 공청회에서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도 그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서 의견일 뿐이고 이 설문지 형태로 그 자리에서 찬반 의견은 받고 이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공청회를 하더라도?

(기획팀장) 예. 거기서 참석을 100명 200명 하셨으면 단순히 의견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속마음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적어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150만원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찬성하는지 아니면 너무 높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봉인을 했다가 2차 회의 때 위원님들 앞에서 봉인을 해제해서 주민 여론이 이렇다는 거를 저희들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걸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결정했다한들 예를 들어서 공청회에서 반대쪽 의견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이쪽에 설문조사 결과 아니다 130만원 140만원 선이 압도적이라 하면 그거를 의견을 2차 회의 때 무시하시면 안되고 규정에 보면 그 주민 의견이 더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사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거든

요. 예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150만원을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150만원에 대해서 더 주민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 설문지입니다.

(○○○위원) 40만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110에서 150으로 40만원 증액됐어.

(기획팀장) 예. 공청회를 하시게 되면 공청회 때는 위원장님이 공청회를 주재를 하시고, 150만원 의견을 주장하실 분, 아까 140만원 다른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께서 발표자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앞에서 이 정도 이런 취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해줘야 그 공청회에 오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저 발표하시는 A라는 분의 의견이 나는 맞다 아니면 B라는 의견이 공감이 된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청회에 참석 안 하시게 되면 회의를 위원님들이 두 번만 하시겠지만 그거까지 생각한 공청회가 결정된다면 회의를 3월까지 세 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공청회를 해도 설문조사는 한다는 거지요?

(기획팀장) 네.

(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 굳이 공청회로 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이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공청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주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취합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서 공청회 참여한 주민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게 공청회를 하면 한 번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더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냥 설문조사를 한다 하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설문조사를 한다 맞습니까?

(기획팀장) 전화로 그냥 하면 사실 일반 주민들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이렇게 상향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그게 주민의 뜻일지 그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부정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의견을 하나 낼게요. 저는 그냥 공청회로 하자 1안에 조금 의견을 내겠습니다. 첫번째 예산도 없다는데 굳이 700이나 들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청회로 한다 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각종 홈페이지에 나가고 그리고 각동에 다 전달이 될 거면 각동에 단체들도 많을거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얘기를 해서 의견들 사람들 참여를 독려를 하면 그 돈 안들이고 쉽게 사람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두번째 여론조사 방금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 부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선거 여론조사를 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500명 이렇게 해봤지만 전화 받는 비율이 상당히 딱 받으면 바로 끊는 사람 있고 10초 듣는 사람 있고 20초 듣는 사람 있고 30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럼 짧으면 짧을수록 바로 끊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주로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조금 전화를 받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이해 부족이 올 수도 있고 이게 그런 분들만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140이든 150이든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청회 쪽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저는 사실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10만원을 아끼면서 여기서도 7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모순적이긴 한데 공청회를 했을 때 과연 어차피 이 공청회라는 것이 주간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참석 가능한 인원이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야간에 하거나 주말에 이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공청회에 참석 가능한 인원도 사실 제한적이고 과연 대표성이 있겠느냐라는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에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유선전화만 했으니까... 낮에 집 전화 받는 사람은 정말 또 없지 않습

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무선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같이 하긴 하던데... 어쨌든 500명이나 인원은 달성을 해야 이제 그쪽에서도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타진을 해서 조금 뭐 알아보더라도 오히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공청회에 갔을 때 찬성 그러니까 150이라고 칩시다. 그럼 150에 찬성 또는 감액 의견들이 나왔을 때 결국 그 자리에서 합의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의견이 다양하다는 걸로만 결론이 나버리면 결국에 정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건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우리 구민 중에 대표성을 가진 500여 분이 이런 의사를 가졌으면 150 그대로 하면 되겠다 또는 감액을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금전적으로는 공청회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런 대표성이라든지 이러한 구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는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여론조사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청회 때도 이 설문조사를 이제 좀 정확하게 받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방금 일을 하다 보면 이 평일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북구에도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일에도 이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북구에 보면 구포 1 2 3 만덕 1 2 3 덕천 1 2 3 이렇게 다 9개 동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홍보 방법처럼 각 동에도 또 봉사단체들이 수십 개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단체에 다 해가지고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참여 인원이 만약 설문조사는 500명이라고 하지만 이 참여 대상이 꼭 500명이 안 되더라도 다양한 동에서 다양한 주민이 각 동에 10명씩만 와도 90명이고 20명 와도 180명이면 이 정도만 각 동에 사람들이 와도 충분히 공청회는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그런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 위원으로서는 아닙니다. 주민이지만 좀 제가 다양한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니까 평일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 주민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특정한 날에 딱 이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는 걸 알리고 이렇게 하면 참여 비율이 좀 분명히 있는 걸 제가 또 확인도 해봤고 해서 공청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그래 일단은 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어차피 설문조사도 공청회를 해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안 하고 이런 조사를 하

는 것보다는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또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공청회로 가자 설문조사로 가자라고 각각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분? 또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네 ○○○위원님

(○○○위원) 저도 지금 이 부분은 공청회가 되었던 여론조사가 됐든 예산의 부분이 아니고 방식에서 지금 보면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게 여론조사가 나은지 공청회가 나은지 이 부분에 나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청회가 맞지 않나 더 가까운 쪽으로. 물론 공청회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안으로 도출하기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거두어 두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어차피 돈하고 결부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의 세비로 부담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의견이 많지 않을까 봐 집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잠시 말했지만 20년 만에 인상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물가 모든 것에 대비하면 이게 40%가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보면 110 대비 150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일단 어쨌든 방식은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공청회가 낫지 않을까 아마 좀 더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번 더 제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지금 조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우리가 공청회가 가장 많은 곳이 보통 이제 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 예를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말하는 게 가덕도 관련 가지고 많이 말하겠죠. 토지 수용이나. 근데 재산권 침해가 있는 곳에서도 사실은 대상자들의 수에 비해 가지고 100여 명씩 모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결국에는 어느 소속된 단체를 통해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의견이 특정인이 사실은 좀 모일 가능성도 염려가 좀 되는... 물론 다 좋은 마음으로 오시니까 누가 가자고 하더라도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좀 염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동원은 아니고 독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독려가 됐을 때 과연 충분히 대표성을 가질까 또 참석이 얼마나 가능할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젊은 층의 참석 부분이었는데 과연 20대 30대 40대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낮

시간대에 아무리 평소에 봉사활동 하시더라도 시간 내서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공청회보다는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인상 말씀하셨던 건 우리 구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인상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 금액 얘기가 잠깐 드리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의정활동비에 플러스 월정수당도 나오는 것이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명예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고 다 겸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이게 전적인 소득원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지금 우리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공청회를 하려면 우리가 이해관계인 사람들도 참여가 주로 잘 안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그게 공청회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론조사는 개인정보 우리 지역별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거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봤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데이터를 이제 구포동에 데이터를 만약에 50개 만덕동에 50개 덕천동에 50개 금곡동에 5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0명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을 때까지 하는 거 우리가 딱히 500명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 이 500명 한다고 받아가지고 500명이 다 응답을 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800개든 1000개든 받아 가지고 500명이 받을 때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성별, 연령, 지역별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데이터를 다 뽑아줍니다. 그런 부분들... 한쪽 동네나 한쪽으로 편향돼서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론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을 해주는 부분을 얼마를 인상해 줄 것이냐 인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내용만 묻는 거기 때문에 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 공청회를 하면 심도 있게 발표를 하고 그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게 이해가 어느 쪽으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는 어차피 도리가 없고 다만 공청회를 해서 할 것이냐 여론조사만 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더 설명 더 발표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위원님

(○○○위원) 기획팀장님 최근 혹시 공청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 단위에서...

(기획팀장) 지금 사업 관련 아니고서는...

(○○○위원) 무슨 사업이든, 구청 단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팀장) 사업을 하는 경우 일종의 주민설명회를 공청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청사 할 때 안했어요?

(기획팀장) 했습니다.

(○○○위원) 했지요? 그러면은 공청회에 맞는 게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아야 되거든. 근데 전화로 하면은 이게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 선거 지금 계속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런 거 계속 들어보면은 이제 듣자마자 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관계는 여러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낫다 싶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하셔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여론조사에 이 내용이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청회를 한번 해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중구가 이제 공청회를 해서 하고 금정구가 공청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공청회를 하면 방청인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표자 질의 답변도 있고 방청인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어느 걸로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청회 우리 북구에도 옛날에 한번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기획팀장) 구청 대회의실에서 신청사 부지 선정할 때 13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네 그때는 했죠.

(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또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아 네 ○○○위원

(○○○위원) 죄송한데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의원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원들 지금 이 의정활동비 말고 월정수당 자체 다 합쳐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일하는 거 아까운 의원이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의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활동 상황에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설문지에 대한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진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올려주면 너희들이 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자기들이 딱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하는데 딱 설문조사로는 딱 이 내용만 읽고 끝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공청회를 진짜 해서 그건 주민들이 이거 올릴까 말까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소리로 들어서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이제 좀 그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싶어서 저는 그래서 공청회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제 낮 시간대에 공청회를 하면 주민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참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뭐 될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공청회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라 참석자 누구라는 가이드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팀장) 그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청회인데...

(기획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기준 금액을 위원회에서는 1차에 150을 했어도 아까 ○○○위원님이나 이런 다른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우리가 150을 이라는 이것만 얘기를 하면 안되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분도 같이 자기 논리를 거기서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얘기도 듣고 이 얘기도 듣고 들어보고 오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그런 자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 잠정 결정액이 150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40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고 150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공청회에서는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1차로 150만원 잠정액을 정했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입장이 어떠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는 정했습니다 그렇게 설명과 설득을 구하는 자리인거지 주민설명회와 같은 취지로 보여지는 거고...

(기획팀장) 설명과 설득을 구하는 주민설명회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가이드가 안 나왔다면서요

(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하고 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일방적인 한쪽 의견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150만원 위원회 의견은 그렇게 모아졌지만 사람을 모아놓고 150이 합당하다는 이 주장만 해서는 안된다고... 반드시 반대 의견도 같이 그 자리에서 해서 의견을 다시 모아달라는 거죠.

(○○○위원) 제가 이제 공청회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실제로 이 해당 대상자가 되는, 대상이 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서 오셔서 본인들께서 직접 청취를 하면 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직접 지적들이 있고 당부를 한다고 하면 정말 들어야 될 자리 같은데 이 분들의 참석에 사실 의무는 아닐 거거든요. 실제로 주재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

내를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면 결국에는 회의록 정리해서 받아온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절대 의견이 수렴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공청회도 사실은 큰 실익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위원장님은 가셔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참석을 했을 때 그 2~3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까 무익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듭니다. 이제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공청회를 하는데 참석자들이 공청회를 하실 때 어떻게 몇 분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람 모으는 거는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와 고시 공고, 현수막, 구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청회 참석을 독려하고, 구청에 있는 대회의실은 최대 200명 안팎 수용 가능한 규모라 참석인원 모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동별 안내를 하든지 그거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청회로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적해 주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어느 쪽이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도 의결을 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지금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한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150만원 결정을 했지만 발표를 할 때는 공청회 할 때는 150만원을 주장했던 사람은 150만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50만원 하는 것이 좋겠다 140만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140만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팀장) 맞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이제 쪽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공청회를 해서 이제 주민 의견들을 묻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

도 충분히 의견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토론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충분한 우리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거수)

그래서 의견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